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64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한지아·고동진·최보윤

박정하 · 임이자 · 서일준

이종배 • 유용원 • 김재섭

박성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,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,161명, 부상 자수는 122,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.

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, 세계보건기구(WHO)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"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 대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"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 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"내용과"를 "내용,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	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	4
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	
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	
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	
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	
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	
롭다는 <u>내용과</u> 임신 중 음주는	내용, 음주운전은 자신
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	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
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	수 있다는 내용과
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